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4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 김선교·이헌승·정동만

김성원 · 김상훈 · 김예지

윤상현 • 박덕흠 • 구자근

김대식 · 최보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에서 융자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% 감면하고,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재산세를 50% 감면하고 있으나, 동 제도들은 2025년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%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,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.

또한,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·재산세 50%

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바,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상황임.

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5년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 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
 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0조제1항).
- 나.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5조제1항).
- 다.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167조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햀 개 정 아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) ① -----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 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 -----2029년 12월 31일 ----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・영어자금・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1. ~ 5.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| 제15조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

대한 감면) ① 「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 제70조제1항에 따 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 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(「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② (생략)
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 「조

대한 감면) ①
<u>2</u>
029년 12월 31일
② (현행과 같음)
1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

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 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 제 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 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.

2029년 12월 31일